

2025년 하반기 성동구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

1. 선발대상 및 장학금

- 공고일(2025. 9. 17.)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의 **대학교 재학생**

구분	분야	지원금	인원(예정)	비고
대학생	복지	최대 200만원 이내 등록금 기준 지급	20명	※ 2025년에 타 기관 [국가·자치단체(출연기관포함)·학교·타장학재단, 기타 장학관련 단체 등] 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만을 지급

- 선발인원은 신청 학생의 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 변경될 수 있음
- 가구별 1명 신청(다자녀 3자녀 이상은 2명 신청 가능)

2.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9. 17.(수) ~ 10. 1.(수)** [15일 간]
 - 접수시간: 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장 추천)
- 접수방법: 신청인(본인 또는 부모) 내방 접수
 - 제출서류는 원본에 한하여 인정
 - 미비서류 보완은 접수기간 내 한하여 인정
 - 신청서는 붙임 양식 활용

3. 선발방법 및 기준

- 선발방법: (공통·분야별) 선발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 우선순위

- 가. 가구원수 대비 건강보험료 낮은 순
- 나. 동 순위일 경우 (정도가 심한)장애인 가정,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우선 선발
- 다. 2차 경합 발생 시 성동구 장기 거주기간으로 선발

○ 세부 자격기준: 아래 붙임1 참조

○ 선발결과: 11월 중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4. 유의사항

- 공고일(2025. 9. 17.)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의 대학생 가능
 -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교환학생, 휴학생 등은 제외
- 대학생 장학생 중 2025년에 타 기관 [국가·자치단체(출연기관 포함)·학교·타 장학재단, 기타 장학관련 단체 등] 에서 1.2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
- 2025년도 해당 학사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정규학기를 복수전공 등으로 8학기를 초과하거나, 학기 중 조기 졸업하는 학생(정규과정 외의 초과(선택) 학기는 신청 불가)은 제외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업과 특기 개발에 부지런히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발전과 재단의 활동(장학증서 수여식,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문의처

○ 성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 (☎ 02-2286-5853)

붙임 1. 세부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구분	자 격 요 건 (요건 모두 해당해야 함)	제 출 서 류
대 학 생	복 지 장 학 생 ①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의 대학생 ②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교육환경에 처한 학생으로 동장 추천을 받은 자 ③ 저소득층 가정(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자녀로 대학교(2년제 이상) 재학 학생 ④ 직전 학기 평점 B학점 이상 인 학생 ※ 건강보험료 연간 중위소득 기준 붙임2 참조	① 장학생 신청서 ② 동장 추천서 ③ 자기소개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년 1~8월) ⑥ 부·모 재산세납세증명서 (2025년분) ⑦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 및 과거 1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⑧ 성적증명서(직전 학기) ⑨ 기타 가점 증빙 서류

※ 제출서류 관련사항

1) 동장 추천서

- 다자녀(자녀 3명 이상), 한부모, 장애인 가정의 경우 추천 사유에 반드시 기재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부·모 중 한 명만 건강보험료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가족 등재사항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팩스(동 주민센터)로 받음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출력(공인인증서 필요)

3) 재산세 납세증명서

- 부·모 명의 각각 제출
- 재산세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재산세 미과세증명 제출

붙임 2. 건강보험료 연간 중위소득 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